

채권 매각 공고(안)

1. 매각대상 채권 내역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주의) 파산 재단에 입금하는 금액을 매수희망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2. 매수의향서 제출방법 및 기한, 장소

가. 제출기한까지 파산관재인 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매수의향서 직접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나, 수신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봉투에 “채무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채권 매수의향서 재중” 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 : 2026. 10. 27. 17:00까지
- 제출 장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1호(학익동, 명인빌딩)
- 최저 매매가 : 금 1,000,000원

나. 매수의향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은 매수희망금액, 매매대금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조건이 맞는 매수 희망자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 일정 시한까지 매매대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의향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보증금(최저매매가 10%)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까지 아래 입찰보증금 입금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계좌 (주)신한은행, 100-026-020350
예금주 문석빈

나.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일반 경쟁입찰
- 이 건 공개매각은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가 응찰자만을 대상으로 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즉시 파산관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매매 잔금은 법원의 매매계약 체결 허가를 받은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은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별도의 이자 없이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라. 입찰서류

- 입찰서 (첨부1 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사본 (입찰자 명의 계좌)

4.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위 매각대상물을 입찰 당시의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위 채권 존재의 여부 및 자체의 하자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전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며,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산재단은 입찰서의 정상적인 도달을 보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입찰서 입찰 금액란에 입찰 금액을 기재한 후 변조방지를 위해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붙여 주시고, 봉투 표면에는 “입찰서 제출” 이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가 봉합된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며, 택배 등 민간 송달수단을 이용한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입찰보증금 전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이전까지 위 지정된 파산재단 보관금 계좌에 반드시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찰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입찰자(입찰서)는 이 건 공개매각의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됩니다.

자. 이 건 공개매각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 또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은 위약금으로서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입찰의 담합 내지 입찰의 방해를 도모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 건 공매절차를 포함하여 추후 모든 공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희망자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파산재단(연락처 032-863-3200, 팩스 032-863-3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두리몽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별지 목록]

매각대상 채권 내역

구분	채권내역	채무자	매각대상 채권금액(원)	비 고
I	물품대금	(주)유림개발 (대표이사 최영진)	원금 24,988,55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의 지연이자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 40086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문 정본

* 본 파산관재인인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 21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진술최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예금 채권(금 1,630만원 상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 지]

매 수 의 향 서

■ 입찰대상 채권 내역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매수희망금액 : 금 원정 (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1만원 미만은 기재하지 말 것.

■ 귀 재단이 제시한 채권 매각공고의 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입찰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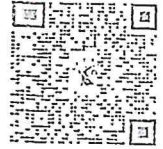
채무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문석빈 귀하

[별지 목록]

매각대상 채권 내역

구분	채권내역	채무자	매각대상 채권금액(원)	비 고
1	물품대금	(주)유림개발 (대표이사 최영진)	원금 24,988,55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의 지연이자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 40086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문 정본

* 본 파산관재인인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 21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진술최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예금 채권(금 1,630만원 상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소400861 물품대금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1호(학익동, 명인빌딩)

피 고 주식회사 유림개발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2층(중화산동2가, 전북노회회관)
대표이사 최영진
소송대리인 박상율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8,55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 부상준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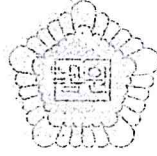
2026. 6. 18.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정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송달/확정증명서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0861 [전자]물품대금
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피 고 : 주식회사 유림개발
증명신청인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유림개발 2026. 6. 23. 송달, 2026. 7. 8. 확정. 끝.

2026. 7. 8.

인천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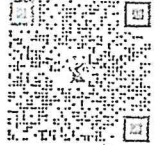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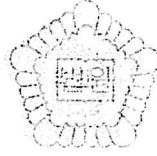
법원주사보

강 민 구



본 증명(문서번호:종합민원실 제증명-2 3574)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32-860-19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집행문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0861 [전자]물품대금

이 정본은 피고 주식회사 유림개발(191311-001548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에게 내어 준다.

2026. 7. 8.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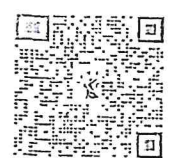
강 민 구



◇ 유 의 사 항 ◇

1. 이 집행문은 판결(결정)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이 경우 분실사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행문을 사용한 후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이 경우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 이하 '주민등록번호등' 이라 함)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합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전 주 지 방 법 원

결 정 정 본입니다.

2026.09.02



사 건
채 권 자

2026타채21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파산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1호(학익동, 명인빌딩)

채 무 자

주식회사 유림개발 (191311-0015480)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2층 (중화산동2가)
대표이사 최영진

제 3 채 무 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대표이사 정상혁
2.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대표이사 정진완
3.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대표자 은행장 장민영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 구 금 액

별지와 같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086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9. 2.

사법보좌관

윤 광 근

전자서명완료

-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참조).
3.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4.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6,814,869원

1) 금 24,988,555원 (원금)

2) 금 1,766,314원 (지연손해금)

(원금 24,988,555원에 대한 2025. 12. 20.부터 2026. 7. 23.까지 연 12%의 비율의 계산한 이자 금 1,766,314원)

3) 금 60,000원 (집행비용 : 인지대 3,600원, 송달료 56,400원)

제3채무자별 청구채권의 내역

- | | |
|--------------|---------------|
| 1. 주식회사 신한은행 | 금 10,000,000원 |
| 2. 주식회사 우리은행 | 금 10,000,000원 |
| 3. 중소기업은행 | 금 6,814,869원 |

채무자 주식회사 유림개발(법인등록번호 191311-0015480)가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입금분 포함).

다 음

1. 압류되지 않는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기업예금 8) MMF
- 9) MMDA 10) 적립식펀드예금 11) 신탁예금 12) 채권형예금
- 13) 청약예금 14) 청약저축 15) 주택종합청약저축 16) CMA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끝 -



우 0392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번지 우리금융상암센터 문의안내 전화: 02- 3151-2000 FAX: 02- 3151-2777

문서번호 : 202609077049291
발신일자 : 2026년09월07일
수 신 : 전주지방법원
참 조 :
제 목 :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으로부터 접수한 채권 (가)압류와 관련한 (진술)최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사건번호	2026타채21414	구분	예	아니요
채무자명	주식회사유림개발	통보비용청구	☒	☐
		포괄계좌유무	☒	☐
		사업자등록번호	201 - 81 - 02819	

- 다 음 -

기준일자 : 2026년09월07일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 한다면 한도	98,870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당행채권있음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해당사항없음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해당사항없음

<참고>

- 채무자가 우리은행에 채무(보증채무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인하여 기한부 예금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계좌가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 58조 제2항에 의거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외화/펀드/신탁등)의 경우에는 평가금액 변동으로 추심 요청시 지급금액과 1번/2번 항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번 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됩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우 06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51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 8층 전화:02)2151-5656 문의안내:압류담당자

문서번호 : SHB-압류-26090703081
발신일자 : 2026년09월09일
수신 : 전주지방법원
참조 :
제목 :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구분	예	아니오
통보비용청구	0	
도판제작유무	0	

1.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원으로부터 접수한 사건번호 2026타채21414 (채무자 (주)유림개발)
채권 (가)압류와 관련한 (진술)최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26년 09월 07일 현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 한다면 한도 ※압류 명령문에 따라 압류한 예금액	9,431,046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압류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예금액(변동가능)	0원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17,532,514원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22037 최동하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21875 주식회사현성베스코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93 정은상 전주지방법원 2024타채28842 유승노 포함 총 4건
5. 기타	압류,대출

<참고>

- 채무자가 신한은행에 채무(보증채무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인하여 기한부 예금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당좌예금, 신탁, 수익증권 등)은 특약, 평가액, 환율변동으로 진술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법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은 추심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당사자(채권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이 확정되어 은행에 송달 시 결정문 주문 내용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1.07.06 이전(없음), 2011.07.06 이후(1,500,000원), 2019.04.01이후(1,850,000원),
2026.02.01 이후(2,500,000원)
- 채무자의 계좌가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등에 이용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압류보다 우선하는 압류(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가 등록되는 경우 추심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상속) 관련 압류의 경우 심판 결과(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따라 추심이 안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혁신부장





우 06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51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 8층 전화:02)2151-5656 문의안내:압류담당자

문서번호 : SHB-청구-26090703081
발신일자 : 2026년09월09일
수신 : 전주지방법원
참조 : 2026타채21414
제목 : 명의인통보비용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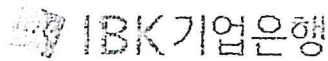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정보제공에 따른 명의인 앞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바, 통보비용을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통보대상건수	청구금액(원)	사업자번호
100-032-308305	(주)신한은행	1	2,000	202-81-02637

※ 채권자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할 수 없습니다.(법원담당자 입금 대상)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혁신부장





(04419)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전화 02-3425-4500

제 3채무자 진술 최고서

문서번호 드로세스혁신투

작성일자 20260907

수 신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타채21414

채 무 자 주식회사 유령개발

참 조 민사신청과 기단장형13제(보좌관)

	예	아니오
통보비용청구	☒	☐
프탈계좌유무	☒	☐
사업자번호	202-81-00979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가. 알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금 6,814,869원]

우편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부 상품(의화, 펀드, 신탁 등) 경우에는 상품 및 평가금액 변동으로 상기 내용의 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이용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알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금 6,814,869원] 경합으로 공탁 될 수 있습니다. 당행 채권 상계 시 실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알류가 금지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에 도통채무 또는 독수채권 등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 진술서의 1, 2항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은 알류 및 기타 법적제한, 질권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채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유의 바랍니다.



5335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1.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없음

2.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제3채무자는 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동합드산법상의 보전처분, 국채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외에 압류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본건 외 (가)압류 및 추심 명칭 4 건

